

[별표 1] 수출금지품목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0208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① 고래고기
40	40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고래·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0210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① 고래고기
9	9	기타(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을 포함한다)		
92	92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고래·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2516	2516	화강암·반암·현무암·사암과 기타 석비용 또는 건축용의 암석		
1	1	화강암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1	11.0000	조상의 것 또는 거칠게 다듬은 것		<div style="border-left: 1px dashed black; border-right: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p> <p>① 자연석</p> </div>
12	12	톱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랩상으로 한 것.		
20	20	사 압		
4301	4301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 제4102호 또는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한다)		
80	80	기타의 모피(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90	90.000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의 조각 또는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에 적합한 것		<div style="border-left: 1px dashed black; border-right: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p> <p>① 개의 생모피</p> </div>
4302	4302	모피(유연처리 또는 완성이공한 것으로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에 한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	1	전신모피(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① 개의 모피
19	19	기 타		
20	20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조각 또는 절단품(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0	30.0000	전신모피 및 그 조각 또는 절단품 (조합한 것에 한한다)		
4303	4303	모피의류·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90	90.0000	기타		다음의 것은 수출할 수 없음. ① 개의 모피제품

[별표 2] 수출제한품목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2505	2505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규산분(SiO_2)이 90% 이하의 것
10	10.0000	규 사		
90	90	기 타		
2517	2517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 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벨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및 제 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과편상·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다음의 것은 승인없이 수출할 수 있음. ① 구석, 싱글과 플린트 2. 기타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0	10	자갈·왕자갈·쇄석·싱글과 플린트		
41	41.0000	대리석의 것		
7206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7203호의 철은 제외한다)		
10	10.0000	잉곳(ingot)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0	90.0000	기 타		
7207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11	1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2	12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19	19.0000	기타		
20	2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7208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10	10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25	25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26	26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7	27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36	36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37	37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38	38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39	39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40	40.000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51	5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2	5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53	5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4	54	기타		
90	90.0000	기타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7209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5	15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16	16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17	17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18	18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25	25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26	26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27	27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28	28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90	90.0000	기타	
7210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11.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2	12.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20	20.000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합석판을 포함한다)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0	3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41	41.0000	물결 모양의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49	49	기타		
50	50.000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61	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69	69.0000	기타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0	7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90	90	기타		
7211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13	13.0000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 (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 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 외한다)		
14	14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 로 한정한다)		
19	19	기타		
23	23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29	29	기타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90	90	기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7212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20	2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30	3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0	4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50	5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60	60.0000	클래드(clad)한 것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7213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1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20	20.0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91	91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밀리미터 미만인 것	
	99	99	기타	
7214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10	10.0000	단조(鍛造)한 것	
	20	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0	30.0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91	91.00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99	99	기타		
7215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10.0000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50.000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	90.0000	기타		
7216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10	10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21	21.0000	엘(L)형강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2	22.0000	티(T)형강		
31	31.0000	유(U)형강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2	32.0000	아이(I)형강		
33	33	에이치(H)형강		
40	40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50	50.000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1	6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69	69.0000	기타		
91	9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99	99.0000	기타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7217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10.000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	20.000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30	3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90	90.0000	기타	
7218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1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91	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99	99	기타	
7219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1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2	1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3	1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14	1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21	2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22	2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23	2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24	2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31	3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32	32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33	33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34	34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35	35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90	90	기타		<p>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7220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1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12	12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20	2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90	90	기타		
7221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00.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2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스강의 형강(形鋼)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1	11.00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19	19.0000	기타		
20	20.000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30.0000	그 밖의 봉		
40	40.0000	형강(形鋼)		
7223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00	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7224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10	10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90	90	기타		<p>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7225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19	19.0000	기타		
30	3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0	40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5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1	91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92	92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99	99	기타		<p>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7226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19	19.0000	기타		
20	20.0000	고속도강의 것		
91	91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92	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99	99	기타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7227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10.0000	고속도강의 것		
20	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90	90	기타		
7228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10.0000	고속도강의 봉		
20	20.0000	실리코망간강의 봉		
30	30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0	40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0	50.000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60	60	그 밖의 봉	
	70	70	형강(形鋼)	
	80	80.0000	중공(中空)드릴봉	
7229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20	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90	90	기타	
7301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용접된 형강(形鋼)	
	10	10	널말뚝(sheet piling)	
	20	20	형강(形鋼)	
7302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첵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받침목(크로스타이)·이음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매판(fish-plate)·좌철(座鐵)·좌철(座鐵)뼈기·밑판(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레일 클립·받침판(bedplate)·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p>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10	10	레일(rail)		
30	30.0000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40	40.000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90	90.0000	기타		
7304	730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11	11.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19	19.0000	기타		<p>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p>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22	22.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p>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23	23.0000	그 밖의 드릴파이프		
24	24.0000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9	29.0000	기타		
31	3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39	39.0000	기타		
41	4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9	49.0000	기타		
51	5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59	59.0000	기타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90	90.0000	기타	<p>미국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p>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p>
7305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11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12	12.00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19	19.0000	기타	
	20	20.000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31	31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39	39.0000	기타	
	90	90.0000	기타	
7306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H S		품 목		수 출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1	11.00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9	19.0000	기타		
21	2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9	29	기타		
30	3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0	4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0	50.000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1	61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69	69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90	90	기타		

[별표 3] '수입제한품목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920.99.100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되지 아니한 것) 중 항공기용의 것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4011.30.000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신품)중 항공기용의 것		
4012.13.000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품)중 항공기용의 것		
4012.20.100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중고품)중 항공기용의 것		
4012.90.1040	삭제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플랩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4012.90.1000 (신설)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기타)중 항공기용의 것	
4013.90.1000		고무제의 인너튜브중 항공기용의 것		
4016.99.1010		가황고무제품(경질고무제품 제외)중 기구, 비행선, 비행기계류, 그라인더, 연, 로토슈트의 부품		
7007.11.1000		강화안전유리 중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두께 8mm 이하)		
7007.11.2000		강화안전유리 중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두께 8mm 초과)		
7007.21.1000		합판안전유리 중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두께 12mm 이하)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7007.21.2000		합판안전유리 중 차량, 항공기, 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 (두께 12mm 초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07.10.0000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중 항공기용의 것		
8409.10.0000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8411.11.1000		터보제트엔진(추진력 25KN이하)중 항공기용의 것		
8411.12.1000		터보제트엔진(추진력 25KN초과)중 항공기용의 것		
8411.21.1000		터보프로펠러엔진(출력 1,100KW이하)중 항공기용의 것		
8411.22.1000		터보프로펠러엔진(출력 1,100KW초과)중 항공기용의 것		
8411.81.1000		가스터빈엔진(출력 5,000KW이하)중 항공기용의 것		
8411.91.1000		가스터빈엔진(출력 5,000KW초과)중 항공기용의 것		
8411.99.1000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엔진의 부분품중 항공기용의 것		
8412.10.1000		항공기용의 것		
8412.90.1010		램제트 및 펄스제트엔진 부분품		
8412.90.1090		기타 반동엔진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8413.30.1000		연료,윤활유급유용 또는 냉각냉매용의 펌프(피스톤식 내연기관용의 것에 한함)중 항공기용의 것		
8414.10.1000		진공펌프 중 항공기용의 것		
8414.51.1000		팬 중 항공기용의 것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8414.59.1000 (신설)		기타 팬중 항공기용의 것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14.60.1000 (신설)		후드 중 항공기용의 것	
	8414.80.9110 (신설)		기체펌프 중 항공기용의 것	
	8421.23.2000 (신설)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21.29.4000 (신설)		기타 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21.31.2000 (신설)		내연기관용 공기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21.39.9030 (신설)		기타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466.20.1000 (신설)		가공용 홀더 중 항공기용의 것	
	8483.10.1000 (신설)		전동축과 크랭크 중 항공기용의 것	
	8483.20.1000 (신설)		베어링 하우징(볼베어링,롤러베어링 갖춘것) 중 항공기용의 것	
	8483.30.1000 (신설)		베어링 하우징(볼베어링,롤러베어링 갖추지 않은것)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중 항공기용의 것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8483.40.1010 (신설)		항공기용 롤러 스크류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483.40.1090 (신설)		항공기용 롤러 스크류 외 기타부품	
	8483.50.1000 (신설)		플라이휠과 폴리 중 항공기용의 것	
	8483.60.1000 (신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중 항공기용의 것	
	8483.90.1000 (신설)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킷, 기타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8511.10.1000 (신설)		점화플러그 중 항공기용의 것	
	8511.20.1000 (신설)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중 항공기용의 것	
	8511.30.1000 (신설)		배전기와 점화코일 중 항공기용의 것	
	8511.40.1000 (신설)		시동전동기와 검용의 시동발전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11.50.1000 (신설)		기타 발전기 중 항공기용의 것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8511.80.1000 (신설)		기타 내연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511.90.1000 (신설)		기타 내연기기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8526.10.1000 (신설)		레이다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1010 (신설)		항행용 무선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2010 (신설)		초단파 수신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3010 (신설)		무선방향 탐지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26.91.9010 (신설)		기타 무선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8544.30.0000 (신설)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 와이어링 세트 중 항공기용의 것	
	8801.00.1000 (신설)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8801.00.9010 (신설)		기구와 비행선	
	8801.00.9090 (신설)		기타 무동력 항공기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8802.11.1000 (신설)		자중 2,000KG 이하의 군용 헬리콥터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802.11.9000 (신설)		자중 2,000KG 이하의 기타 헬리콥터	
	8802.12.1000 (신설)		자중 2,000KG 초과하는 군용 헬리콥터	
	8802.12.9000 (신설)		자중 2,000KG 초과하는 기타 헬리콥터	
	8802.20.1000 (신설)		자중 2,000KG 이하의 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20.2000 (신설)		자중 2,000KG 이하의 터보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20.3000 (신설)		자중 2,000KG 이하의 터보제트식 항공기	
8802.20.9000		자중 2,000KG 이하의 기타 항공기		
8802.30.1000		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30.2000		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터보프로 펠러식 항공기		
8802.30.3000		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터보제트식 항공기		
8802.30.9000		자중 2,000KG초과 15,000KG 이하 기타 항공기		
8802.40.1000		자중 15,000KG초과 프로펠러식 항공기		
8802.40.2000		자중 15,000KG초과 터보프로펠러식 항공기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8802.40.3000		자중 15,000KG초과 터보제트식 항공기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802.40.9000		자중 15,000KG초과 기타 항공기		
8802.60.1010		인공위성		
8802.60.1090		기타 우주선		
8802.60.2000		우주선 운반로켓	우주선 발사체	
8802.60.3000		서보비털	서보비털 발사체	
8803.10.0000	삭제	프로펠러와 로터 및 이들의 부분품	삭제	
8803.20.0000	삭제	기체지지부와 그 부분품	삭제	
8803.30.1000	삭제	기타 부분품 중 비행기용의 것	삭제	
8803.30.2000	삭제	기타 부분품 중 헬리콥터용의 것	삭제	
8803.90.1000	삭제	글라이더, 행글라이더용의 부분품	삭제	
8803.90.2000	삭제	우주선(인공위성 포함)용의 부분품	삭제	
8803.90.9000	삭제	기타 항공기의 부분품	삭제	
8804.00.1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 및 패러글라이더 포함)		
8804.00.2000		로토슈트		
8804.00.9010		낙하산의 부분품		
8804.00.9020		로토슈트의 부분품		
8805.10.1010		군경용 항공기 발진장치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8805.10.1090		기타 항공공기 발진장치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805.10.2010		군경용 감관착륙장치 또는 유사장치		
8805.10.2090		기타 감관착륙장치 또는 유사장치		
8805.10.9010		군경용 발진장치 및 착륙장치의 부분품		
8805.10.9090		기타 발진장치 및 착륙장치의 부분품		
8805.21.1010	삭제	군경용 모의 공중전장치	삭제	
8805.21.1090	삭제	기타용 모의 공중전장치	삭제	
	8805.21.1000 (신설)		모의 공중전장치	
8805.21.2010	삭제	군경용 모의 공중전장치 부분품	삭제	
8805.21.2090	삭제	기타용 모의 공중전장치 부분품	삭제	
	8805.21.2000 (신설)		모의 공중전장치 부분품	
8805.29.1010		군경용 지상비행훈련장치		
8805.29.1090		기타용 지상비행훈련장치		
8805.29.2010	삭제	군경용 지상비행훈련장치 부분품	삭제	
8805.29.2090	삭제	기타용 지상비행훈련장치 부분품	삭제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8805.29.2000 (신설)		지상비행훈련장치 부분품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806.10.0000 (신설)		기타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무인기 중 승객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8806.21.0000 (신설)		기타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무인기 중 최대 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8806.22.0000 (신설)		기타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무인기 중 최대 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23.0000 (신설)		기타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무인기 중 최대 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24.0000 (신설)		기타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무인기 중 최대 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29.0000 (신설)		기타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무인기 중 기타의 것	
	8806.91.0000 (신설)		기타 무인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8806.92.0000 (신설)		기타 무인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8806.93.0000 (신설)		기타 무인기 중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806.94.0000 (신설)		기타 무인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99.0000 (신설)		기타 무인기 중 기타의 것	
	8807.10.0000 (신설)		기구·비행선, 글라이더와 그밖의 무동력 항공기, 그 밖의 항공기, 무인기의 프로펠러·로터와 이들의 부분품	
	8807.20.0000 (신설)		기구·비행선, 글라이더와 그밖의 무동력 항공기, 그 밖의 항공기, 무인기의 이착륙장치와 그 부분품	
	8807.30.1000 (신설)		비행기의 부분품	
	8807.30.2000 (신설)		헬리콥터의 부분품	
	8807.30.3000 (신설)		무인기의 부분품	
	8807.90.1000 (신설)		글라이더나 행글라이더의 기타 부분품	
	8807.90.2000 (신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	
	8807.90.9000 (신설)		기구·비행선, 글라이더와 그밖의 무동력 항공기, 그 밖의 항공기, 무인기의 기타 부분품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9014.10.1010		자이로식 방향탐지용 콤팩스 중 항공기용의 것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9014.10.2010		자기식 방향탐지용 콤팩스 중 항공기용의 것		
9014.20.0000		항공용 또는 우주항행용 기기(콤팩스 제외)		
9014.90.1000		방향탐지용 콤팩스와 기타 항행용기기 부분품 과 부속품 중 항공기용의 것		
8414.59.1000	삭제	기타 팬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414.60.1000	삭제	후드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414.80.9110	삭제	기체펌프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421.23.2000	삭제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421.29.4000	삭제	기타 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421.31.2000	삭제	내연기관용 공기여과기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421.39.9030	삭제	기타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466.20.1000	삭제	가공용 홀더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483.10.1000	삭제	전동축과 크랭크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483.20.1000	삭제	베어링 하우징(볼베어링,롤러베어링 갖춘것)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483.30.1000	삭제	베어링 하우징(볼베어링,롤러베어링 갖추지 않은 것)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483.40.1010	삭제	항공기용 롤러 스크류	삭제	
8483.40.1090	삭제	항공기용 롤러 스크류 외 기타부품	삭제	
8483.50.1000	삭제	플라이휠과 폴리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483.60.1000	삭제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8483.90.1000	삭제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기타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511.10.1000	삭제	점화플러그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511.20.1000	삭제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511.30.1000	삭제	배전기와 점화코일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511.40.1000	삭제	시동전동기와 겸용의 시동발전기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511.50.1000	삭제	기타 발전기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511.80.1000	삭제	기타 내연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511.90.1000	삭제	기타 내연기기 부분품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526.10.1000	삭제	레이다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526.91.1010	삭제	항행용 무선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526.91.2010	삭제	초단파 수신기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526.91.3010	삭제	무선방향 탐지기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526.91.9010	삭제	기타 무선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544.30.0000	삭제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 와이어링 세트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8801.00.1000	삭제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삭제	
8801.00.9010	삭제	기구와 비행선	삭제	
8801.00.9090	삭제	기타 무동력 항공기	삭제	
8802.11.1000	삭제	자중 2,000KG 이하의 군용 헬리콥터	삭제	
8802.11.9000	삭제	자중 2,000KG 이하의 기타 헬리콥터	삭제	
8802.12.1000	삭제	자중 2,000KG 초과하는 군용 헬리콥터	삭제	

H S		품 목		수 입 요 령
현행	개정	현행	개정	
8802.12.9000	삭제	자중 2,000KG 초과하는 기타 헬리콥터	삭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8802.20.1000	삭제	자중 2,000KG 이하의 프로펠러식 항공기	삭제	
8802.20.2000	삭제	자중 2,000KG 이하의 터보프로펠러식 항공기	삭제	
8802.20.3000	삭제	자중 2,000KG 이하의 터보제트식 항공기	삭제	
9032.10.1020		가변식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1.1010		액면자동조절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1.2010	삭제	유량자동조절기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9032.81.9010	삭제	기타 조절기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9032.81.2000 (신설)		액압식이나 공기식 자동조절용·자동제어용 기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9.2010		전압자동조정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9.3010		기타 전기적량의 자동조정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89.9010		기타 자동조정기 중 항공기용의 것		
9032.90.1000		자동조정기 부분품과 부속품 중 항공기용의 것		
9401.10.0000		항공기용의 의자		